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331 호

2000 년 7 월 29 일 토 요일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328호(담배소매인지정공고) ----- 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329호(담배소매인지정공고) ----- 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330호(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개정규칙(안)입법예고공고) --- 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331호(담배소매인지정공고) ----- 18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332호(노상적치물등의보관및처리에관한공고) --- 19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남동구 편집 : 문화공보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 - 328호

담배소매인지정공고

담배사업법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1조9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지정 처리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0. 7. 2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담배소매인지정 현황 】

구 분	지정일	지정번호	성 명	사업장 주소	상 호	비고
일반소매인	2000.7.25	89	유 인 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35 (남동공단166 럭1롯데)	서광매점	

끝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 - 329호

담배소매인지정공고

담배사업법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1조9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지정 처리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0. 7. 2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담배소매인지정 현황 】

구 분	지정일	지정번호	성 명	사업장 주소	상 호	비고
일반소매인	2000.7.26	90	남궁 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16-2 (남동공단9블럭31롯데)	남영테크	

끝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 - 330호

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개정규칙(안)입법예고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 7. 2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2000. 5. 15 조례 제 575호)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개정내용** : “별첨 개정조례(안)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0년 8월 21까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 : 산업경제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연락전화 453-2490, 2491)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5. **공청회 개최계획** : “계획 없음”

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0. 7.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개정 이유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2000. 5. 15 조례 제575호)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 골자

- 시행규칙에서 사용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금융기관, 재무제표 등의 용어를 정의함 (제2조)
-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정함(제3조, 제4조)
- 기금융자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한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 (제5조 내지 제14조)
-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을 정하고, 지원자금의 사용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며 이를 근거로 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성과를 분석토록 하고 지원 사업체 선정의 취소 및 자금의 조기회수 또는 이차보전금 지급 중단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5조 내지 제20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사항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 다.	①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 한다.
②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 다)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사업자금 등의 융자를 위해 구에서 조성하는 출연금을 말한다.	②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 다)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사업자금 등의 융자를 위해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재원 으로 구에서 조성하는 기금을 말한다.
③ “이차보전금”이라 함은 계약채결은행 (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기업에 대한 융 자시 기업을 대신하여 구에서 부담하는 일정이자액을 말한다.	③ “금융기관”이라 함은 기금의 관리 및 융자지원에 관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구금고를 말한다.
④ “재무제표”라 함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제조 원가명세서를 말한다. 다만, 재무제표의 관할세무서장 확인이 불가능한 시기에는 세무서나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신고예정 재무제표를 징구하고 추후 관할 세무서장 이 확인한 신고예정 재무제표를 징구하고 추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를 보완 받을 수 있다.	④ “이차보전금”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기업에게 대출한 융자금의 이자중 기업 을 대신하여 구에서 부담하는 일정이자 액을 말한다. ⑤ “재무제표”라 함은 세무사나 공인회 계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를 말한다

현행	개정안
제2장 기금관리 제3조(기금운용계약)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예치 및 운용방법에 대하여 매년 시중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기금예치) 기금중 출연금과 출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은행에 예치 관리한다. 1. 출연금은 일정기간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만기시 재예치한다. 2. 출연금 등으로 발생한 이자는 정기적금 또는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여 그 수입을 증액 관리한다. 제5조(기금운용) ①기금은 출연금과 출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그 이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로 운용한다. ②출연금은 재예치하는 경우와 사업폐지를 제외하고는 지출할 수 없다. ③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은행의 이차보전금 등에 지출한다. ④ 전항의 이차보전금 지급시기는 은행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2장 기금관리 제3조(기금운용협약)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예치 및 운용방법에 대하여 매년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기금운용) ①기금은 출연금과 출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로 운용한다. ②출연금은 재예치하는 경우와 사업의 폐지를 제외하고는 지출할 수 없다. ③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아차보전금 지급 및 기금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한다. ④전항의 이차보전금 지급시기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3장 융자심의위원회 제6조(설치) 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 등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장 융자심의위원회 제5조(설치) 구청장은 기금융자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사회산업국장, 남동구 의회의원 1명, 협약체결은행지점장, 신용보증기금지점장, 기술신용보증기금지점장, 한국산업단지공단서부지역본부남동지원처장,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중 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위원회 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제7조제2항중 남동구의회의원과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제외한 위원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중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고 그 임기를 대행할 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괄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2. 금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1인 3. 신용보증기금남동지점장 4. 기술신용보증기금남동지점장 5. 한국산업단지공단북부지역본부 남동지원처장 ④위촉위원은 지역경제와 관련되는 기관, 단체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⑤위원중 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할 때 만료되며 그 후임자가 승계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고 그 임기를 대행할 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현행	개정안
1.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의 결정 2. 융자 우선순위 결정 3. 기타 융자에 관한사항 제11조(융자범위) ①1개업체에 대한 융자한도 및 대출기간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②융자수혜업체는 융자금의 전액상환시까지 재융자 받을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외시장개척자금으로 1,00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을 받은 업체는 별도의 사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융자시기에 맞추어 년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간사는 산업경제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업무담당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의 결정 2. 융자 우선순위 결정 3. 기타 융자에 관한사항 제10조(융자의 제한) 인천광역시 및 타 구·군에서 지원하는 동일한 용도의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는 융자금을 전액 상환하기까지는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에서 정한 융자결정금액이 조례 제10조에서 정한 업체당 융자한도액에 미달된 경우에는 그 차액의 범위내에서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소집 등) ①회의는 구청장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간사는 산업경제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업무담당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15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사 후 관 리	
제16조(사후관리기간)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의 사후관리기간은 은행의 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기간으로 한다.	제15조(사후관리기간)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의 사후관리 기간은 대출기간으로 한다.
제17조(실적서 제출등) ①구청장은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동안 매회계년도 경과후 6월 이내에 사업별 소정의 실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업체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제16조(실적서 제출 등) ①구청장은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중 지원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토록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용내역에 대하여 현지에서 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업체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1. 계획의 추진상황 및 정상가동여부 2. 지원자금 적정사용 여부 3. 계획변경의 필요성 여부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에서 사용내역에 대하여 점검할 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1. 정상가동여부 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사업전환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도 이행촉구 또는 시정요구 경고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대출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계획을 추진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행	개정안
2. 사업계획기간내에 사업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18조(성과분석)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서 또는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결과에 의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변경신고 및 변경승인) ①선정업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1. 상호 2. 공장소재지 3. 대표자 성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 신고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하여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행촉구 또는 경고할 수 있다. 제20조(선정취소) 선정된 사업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있다. 1. 제2조제4호 단서규정에 의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재무제표와 추후징구된 관할 세무서장 확인 재무제표의 차이가 현저하여 선정 및 자금지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17조(성과분석)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내역 점검결과에 의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변경신고) ①선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상호 2. 공장소재지 3. 대표자 성명(법인의 대표와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 신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2. 상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기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업체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행촉구 또는 경고할 수 있다. 제19조(선정취소) 선정된 사업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행촉구 또는 시정요구와 경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현행	개정안
2. 이행촉구 또는 시정요구와 경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국세 및 지방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 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자. 4. 휴·폐업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 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5. 담보제공(신용보증서 포함)이 불가능 하여 지원결정 통보액이 전액 실효된 자. 6. 자금지원기간중 타 시·군·구로 공 장을 이전하는 경우 7. 기타 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지원자금의 조기회수) 자금지원 을 받은 업체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또는 지원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 에 불구하고 지원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조기회수 할 수 있다.	2. 국세 및 지방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 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 정 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 은 자. 3. 휴·폐업중인 자로서 사업을 추진하 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4. 담보제공(신용보증서 포함)이 불가능 하여 지원결정 통보액이 전액 실효된 자. 5. 자금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6. 기타 자금지원목적의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지원자금의 조기회수) 자금지원 을 받은 업체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또는 지원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 에 불구하고 지원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조기회수 하거나 조례 제10조 제3항의 이차보전금지급을 중단할 수 있 다.
제5장 보 칙	제5장 보 칙
제22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 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 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 시행이전에 지원한 업체에 대 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 ②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사업자금 등의 용자를 위해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재원으로 구에서 조성하는 기금을 말한다.
- ③ “금융기관”이라 함은 기금의 관리 및 용자지원에 관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구금고를 말한다.
- ④ “이차보전금”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기업에게 대출한 용자금의 이자중 기업을 대신하여 구에서 부담하는 일정이자액을 말한다.
- ⑤ “채무제표”라 함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재조원가명세서를 말한다.

제2장 기 금 관 리

제3조(기금운용협약)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예치 및 운용방법에 대하여 매년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기금운용) ①기금은 출연금과 출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로 운용한다.

②출연금은 재예치하는 경우와 사업의 폐지를 제외하고는 지출할 수 없다.

③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이차보전금 지급 및 기금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

용한다.

④전항의 이차보전금 지급시기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3장 용자심의위원회

제5조(설치) 구청장은 기금용자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중 소기업육성자금용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괄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2. 금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자 1인
3. 신용보증기금남동지점장
4. 기술신용보증기금남동지점장
5. 한국산업단지공단북부지역본부 남동지원처장

④위촉위원은 지역경제와 관련되는 기관, 단체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⑤위원중 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할 때 만료되며 그 후임자가 승계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고 그 임기를 대행할 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자대상자 및 용자금액의 결정
2. 용자 우선순위 결정
3. 기타 용자에 관한사항

제10조(용자의 제한) 인천광역시 및 타 구·군에서 지원하는 동일한 용도의 자금을 용자받은 업체는 용자금을 전액 상환하기까지는 용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에서 정한 용자결정금액이 조례 제10조에서 정한 업체당 용자한도액에 미달된 경우에는 그 차액의 범위내에서 용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소집 등) ①회의는 구청장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간사는 산업경제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업무담당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사 후 관 리

제15조(사후관리기간)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의 사후관리 기간은 대출기간으로 한다.

제16조(실적서 제출 등) ①구청장은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중 지원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토록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용내역에 대하여 현지에서 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업체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에서 사용내역에 대하여 점검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1. 정상가동여부
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성과분석)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내역 점검결과에 의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변경신고) ①선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상호
 2. 공장소재지
 3. 대표자 성명(법인의 대표와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한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 신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2. 상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기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업체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행촉구 또는 경고할 수 있다.

제19조(선정취소) 선정된 사업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행촉구 또는 시정요구와 경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국세 및 지방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자.
3. 휴·폐업중인 자로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4. 담보제공(신용보증서 포함)이 불가능하여 지원결정 통보액이 전액 실효된 자.
5. 자금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6. 기타 자금지원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지원자금의 조기회수)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또는 지원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불구하고 지원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회수 하거나 조례 제10조 제3항의 이차보전금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1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이 규칙 시행이전에 지원한 업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 - 331호

담배소매인지정공고

담배사업법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1조9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지정 처리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0. 8. 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담배소매인지정 현황 】

구 분	지정일	지정번호	성 명	사업장 주소	상 호	비고
일반소매인	2000.7.28	91	정 윤 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29-6	대우매점	
상 동	2000.7.28	92	노 주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74	구내식당	

끝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 - 332호

노상적치물등의보관및처리에관한공고

우리구 관내 도로를 무단점용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초래하는 노상 적치물에 대하여 도로법 제54조 7규정에 의거 대집행하고, 대집행시 수거된 적치물을 동법시행령 제29조의 5(적치물등의 보관 및 처리 규정) 제2항에 의거 공고하오니, 해당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리자가 아래 공고기간내에 동시행령 제29조의 6에 의한 적치물 등의 반환을 요구할 시 동법 제86조의 2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후 반환토록 하겠으며, 아래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권리행사를 행하지 않을 시에는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7규정에 의거 우리구에 귀속 처리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 7. 2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0년 7월 28일 ~ 2000년 8월 10일까지(14일간)
2. 적치물 귀속 처리일 : 2000년8월10일 이후부터 3개월 경과 후
3. 적치물 귀속 처리 내용 : 폐기 처리
4. 적치물 보관 및 처리 대상 : “불임” 참조

1999년도 적치물 보관 및 처리 대상

일련 번호	물건명	수량	보관 연월일	보관 장소	위반장소	취급자 성명	비고
1	손수레	1대	99.3.26	간석2동	간석동 모리스가구 앞	신동수	도로무단 침범
2	포장마차 (가스통2, 난로1)	1대	99.3.26	남동구청	간석동 일방통행로	"	"
3	오징어 구이기계 가스통	2개	99.4.13	"	간석3동 지하철 건설본부 앞	"	"
4	손수레	1대	99.4.17	"	구월1동 뉴코아백화점 뒷길	"	"
5	손수레	1대	99.4.19	"	남촌동 농협앞	"	"
6	택자6, 의자34	40개	99.4.29	"	남동공단 팔각정 밑 다리 위	"	"
7	커피자판기	1개	99.5.3	"	남동공단 팔각정 앞	"	"
8	좌판	4개	99.5.4	"	농산물 센타 정문 앞	"	"
9	군고구마통 (리어커포함)	1개	99.5.6	"	간석2동 희망백화점 이상교소아과 앞	"	"
10	과일 좌판	1개	99.5.60	"	간석2동 희망백화점 상인천한의원 앞	"	"
11	손수레(닭꼬치)	1대	99.5.8	"	장수동 대공원 정문 입구	"	"
12	포장마차	1대	99.5.10	"	간석3동 광명장 앞	"	"
13	포장마차	1대	99.5.10	"	간석4동 주안정형외과 앞	"	"
14	포장마차 (가스통,집기류)	1대 2개	99.5.12	"	약산입구(초소) 가천길대학 입구	"	"
15	포장마차(집기류)	1대	99.5.14	"	약산 입구초소 옆 가천길대학 입구	"	"
16	손수레(붕어빵)	1대	99.5.18	"	만수6동 금호APT 앞	"	"
17	포장마차 (손수레,집기류포함)	1대	99.5.24	"	구월1동 길병원 이비인후과 앞	"	"
18	포장마차 (손수레,집기류포함)	1대	99.5.24	"	간석3동 간석시장 앞	"	"
19	손수레	1대	99.5.25	"	남촌동 농협 앞	"	"

일련 번호	물건명	수량	보관 연월일	보관 장소	위반장소	취급자 성명	비고
20	포장마차 (파이프 및 포장)	1대	99.5.25	남동구청	남동공단 소방서 앞	신동수	도로무단 점용
21	포장마차(가스통)	1대 1개	99.6.3	"	구월4동 연세산부인과 앞	"	"
22	손수레	2대	99.6.7	"	간석3동 시장앞 (콘서트 노래방)	"	"
23	손수레	1대	99.6.7	"	간석3동 국민은행 앞	"	"
24	손수레,입간판, 여항(산소)	1대	99.6.9	"	논현동 소래포구 입구	"	"
25	군고구마통	1대	99.6.22	"	간석3동 지하철 본부 앞	"	"
26	손수레	1대	99.6.22	"	간석3동 지하철 본부앞	"	"
27	손수레	1대	99.6.23	"	간석3동 지하철 본부앞	"	"
28	테이프 좌판	1대	99.6.24	"	간석3동 지하철 본부앞	"	"
29	손수레	1대	99.6.25	"	만수6동 3지구 대동APT 사거리	"	"
30	손수레	1대	99.7.1	"	남촌동 농협 앞	"	"
31	냉장고	2대	99.7.1	"	남촌동 농협 앞	"	"
32	손수레	1대	99.7.6	"	만수2동 신인하안경 뒤 골목	"	"
33	손수레 뽕튀기손수레 가스통	3대 1대 1개	99.7.9	간석4동	간석4동 우성APT앞 주차장	"	"
34	손수레 가스통 버너	1대 2개 2개	99.7.14	남동구청	구월3동 수협뒤 '공원'	"	"
35	간판(대한매일신문)	10개	99.7.15	"	관문교	"	폐기처분
36	포장천막 가스통 뽕틀 책상 바람막이	2개 1개 1개 1개	99.7.31	만수2동	만수2동 주공APT 입구	"	도로무단점용
37	포장손수레	1대	99.8.7	간석3동	간석3동 이의원 앞	"	"
38	포장손수레	1대	99.8.7	남동구청	(구)강우혁사무실 앞	"	"

일련 번호	물건명	수량	보관 연월일	보관 장소	위반장소	취급자 성명	비고
39	포장손수레 가스통 버너 프라스틱	2개 2개 1개	99.8.18	남동구청	만수1동 임대APT 상가 앞	신동호	도로무단 정용
40	포장손수레 가스통 빵틀	1개 1개	99.8.20	"	만수1동 임대APT 후문	"	"
41	냉장고통	1대	99.8.20	"	만수1동 임대APT 후문	"	"
42	포장손수레 빵틀	1개	99.8.20	"	만수1동 임대APT 후문	"	"
43	포장손수레 가스통 고무통	2 1개	99.8.20	"	만수1동 임대APT 후문	"	"
44	포장손수레(집기류) 가스통 빵틀	2개 1개	99.8.30	"	구월1동 동남APT 앞	"	"
45	포장마차(집기류)	1대	99.9.2	"	간석1동 간석회관 옆 소방도로	"	"
46	바베큐통 미니 손수레	1개 1대	99.9.7	"	구월동 모래내시장내 인더언 바베큐	"	"
47	가스통 전기줄	1개 1롤	99.9.9	"	장수 고가 밑 교각 옆	"	"
48	손수레 스텐다라 고무다라 카트	1대 1개 3개 1대	99.9.11	"	만수4동 동사무소 앞 주공 216동 옆	"	"
49	소금 나무좌판	10포 3개	99.9.11	만수4동	만수4동 동사무소 앞 주공 216동 옆	"	"
50	손수레(포장마차) 집기류	1대	99.9.27	"	구월시장 입구(한국산업 앞)	"	"
51	손수레 탁자 의자 파라솔 TV	1대 3개 3개 1개 1대	99.9.28	"	간석3동 태화APT 앞	"	"
52	청색앵글 가스통 버너 파라솔	1 1개 1개 1개	99.10.4	남동구청	소래포구 구 도로	"	"

일련번호	물건명	수량	보관 연월일	보관 장소	위반장소	취급지 성명	비고
53	저울 파라솔대,바구니	1개	99.10.6	남동구청	구월시장 금성당 앞	신동수	도로무단 점용
54	생선좌판	2개	99.10.9	"	만수2동 삼부APT 뒤	"	"
55	손수레 가스통외 집기류	1대 2개	99.10.11	"	구월4동 모래내 약국 앞	"	"
56	포장마차 의자 외 집기류	1대 5개	99.10.11	"	간석3동 약산위 펜더APT 옆	"	"
57	입간판	1개	99.10.14	"	간석1동 갤럭시호텔 옆 서편제주점 앞	"	"
58	좌판 비닐포장	3개 3개	99.10.14	"	구월4동 모래내시장 롯데리아 앞	"	"
59	포장마차 가스통외 집기류	1대 1개	99.10.20	"	간석2동 보디가드 앞	"	"
60	포장마차	1대	99.10.27	"	간석3동 두진APT 옆	"	"
61	좌판	2개	99.10.28	"	구월4동 모래내 시장 내	"	"
62	포장마차	1대	99.11.1	"	간석3동 약산초등학교 모퉁이	"	"
63	포장마차	1대	99.11.1	"	간석3동 동경약국 앞	"	"
64	탁자 난로 포장감바,파이프	4개 1개	99.11.6	"	고잔동 면허시험장 옆	"	"
65	손수레 강 굴 생감 고구마 당근 사과	1대 2 8 1 4 1 1	99.11.15	"	구월3동 동아아파트 건너편	"	과일,야채 폐가처분
66	가스통 의자	1개 6개	99.11.18	"	구월1동 한빛은행 앞	"	도로무단 점용
67	손수레	1대	99.11.22	"	만수1동 주공 7단지 상가앞	"	"
68	좌판 손수레	1개 1대	99.11.25	"	간석2동 나사렛 한방병원앞	"	"
69	손수레	1대	99.11.29	"	남촌동 풍림3차아파트 정문앞	"	"
70	컨테이너 (샷시제작사무실)	1	99.11.29	도림소방 서열창고	남촌동 풍림3차아파트 입구	"	"

일련 번호	물건명	수량	보관 연월일	보관 장소	위반장소	취금지 성명	비고
71	포장마차 의자	1대 10개	99.12.1	남동구청	구월1동 인향스포렉스 옆	신동수	도로무단점용
72	손수레	1대	99.12.2	"	구월2동 삼화공업사 앞	"	"
73	군고구마통	1대	99.12.16	"	만수1동 삼환아파트 2단지 모퉁이	"	"
74	포장마차 진열장	1대 1	99.12.23	"	만수6동 창대순대 옆	"	"
75	냉장고외 접기 프라스틱 바구니 합판	8 5	99.12.28	"	간석3동 간석시장 옆	"	"

2000년도 적치물 보관 및 처리 대상

일련 번호	물건명	수량	보관 연월일	보관 장소	위반장소	취급자 성명	비고
1	손수레 가스통 전기스토브 의자	1대 1개 1개 7개	'00.1.10	남동구청	간석1동 갤럭시호텔 앞	신동수 도로무단 점용	
2	손수레, 고구마	1대	'00.1.12	"	구월1동 까르프 쇼핑 맞은편	"	"
3	군고구마통	1대	'00.1.12	"	"	"	"
4	손수레	1대	'00.1.12	"	"	"	"
5	손수레	1대	'00.1.12	"	"	"	"
6	포장손수레 피자오븐	1대 1대	'00.1.17	"	간석3동 신명여고 앞	"	"
7	입간판 (복순아구탕)	1개	'00.1.26	"	구월3동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	"
8	가스통	1개	'00.1.28	"	구월1동 농산물 시장 옆	"	"
9	군고구마통	1개	'00.2.9	"	간석3동 태화APT 101동 앞	"	"
10	가스통	1대	'00.2.10	"	간석3동 명동회관 앞	"	"
11	군고구마 손수레	1대	'00.2.23	"	만수5동 남동농협 밑 구두박스 옆	"	"
12	군고구마 통	1대	'00.2.23	"	만수5동 효성상아APT 7동 옆	"	"
13	오븐 가스통	1개 1개	'00.2.23	"	만수5동 효성상아APT 7동 옆	"	"
14	가스통 포장마차	2개 1대	'00.2.23	"	만수5동 소방파출소 옆	"	"
15	포장 손수레 가스통	1대 1개	'00.2.23	"	만수5동 소방파출소 옆	"	"
16	손수레 뽕틀	1대 1개	'00.3.14	"	구월1동 김스앞	"	"
17	손수레 가스통	1대 2개	'00.3.14	"	남촌동 풍림2차아파트 앞	"	"

일련 번호	물건명	수량	보관 연월일	보관 장소	위반장소	취급자 성명	비고
18	손수레	1대	'00.3.16	남동구청	남촌동 장애자 사무실 앞	신동수	도로무단 정용
19	손수레 가스통 가스난로 카타기	1대 2개 1개 1개	'00.3.17	"	구월동 농산물 센터 후문	"	"
20	몽어빵틀 손수레 가스통	1대 1개	'00.3.31	"	구월3동 문화예술회관 부페식당 앞	"	"
21	파라솔 팽튀기	1개 3	'00.4.4	"	간석2동 인제 약국 앞	"	"
22	손수레 저울	1대 1개	'00.4.20	"	구월3동 순복음교회 앞	"	"
23	손수레(떡볶이)	1대	'00.4.20	"	구월3동 순복음교회 앞	"	"
24	좌판	1개	'00.4.27	"	만수2동 향림정 입구	"	"
25	좌판 손수레	1개	'00.4.27	"	만수2동 향림정 입구	"	"
26	손수레(피자)	1대	'00.4.28	"	간석3동 지하철 본부 앞	"	"
27	손수레	1대	'00.4.28	"	만수1동 임대주공 후문 앞	"	"
28	손수레(피자)	1대	'00.4.28	"	만수1동 임대주공 후문 앞	"	"
29	손수레(계란빵)	1대	'00.5.10	"	만수4동 주공아파트 뒤편	"	"
30	손수레	1대	'00.5.10	"	만수4동 주공아파트 뒤편	"	"
31	생선냉장고 보온의자	1개 1개	'00.5.18	"	간석3동 시장 뒤	"	"
32	좌판	1개	'00.5.18	"	간석3동 시장 뒤 미용실 앞	"	"
33	입간판	1개	'00.5.24	"	만수2동 오양산업입구(키스하우스)	"	"
34	입간판	1개	'00.5.25	"	간석3동 국민은행 맞은편(무학)	"	"
35	손수레(가스통)	1대	'00.5.30	"	만수1동 성당 앞	"	"
36	손수레 가스통	1대 2개	'00.5.30	"	만수1동 건설기술교육원 담장	"	"
37	손수레	1대	'00.5.30	"	(구)남동구청 건너편	"	"

일련 번호	물건명	수량	보관 연월일	보관 장소	위반장소	취급지 성명	비고
38	손수레	1대	'00.5.30	남동구청	만수1동 북개천 세차장 앞	신동수	도로무단 정용
39	좌판 진열장	2개 1개	'00.6.8	"	만수6동 공영개발 앞 노상	"	"
40	(포장마차)입간판 파이프천막 수족관 생선진열장	2개 1개	'00.6.12	"	논현동 동보아파트 103동앞 인도	"	"
41	포장마차 좌판	1대 1개	'00.6.20	"	구월3동 배수펌프장 앞	"	"
42	손수레 가스통	1대 1개	'00.6.23	"	간석1동 상인천 체육관 앞	"	"
43	좌판 가스통 버너 비닐덮개	1개 2개 3개 1	'00.6.27	"	구월4동 1004의류점 앞	"	"
44	파라솔 받침대	3개 5개	'00.6.30	"	간석1동 동서마트 앞	"	"
45	과일(수박)	31개	'00.7.3	"	만수4동 주공1단지입구	"	폐기처분
46	좌판(바나나빵틀)	1개	'00.7.4	"	남촌동 풍림3차앞 도로	"	도로무단점용
47	포장마차, 집기류 포장파이프 손수레	1 2대	'00.7.6	"	간석1동 카디날 빌딩 앞	"	"
48	좌판, 군고구마통	2대	'00.7.6	"	만수주공 2단지 입구, 게시판 앞	"	"
49	좌판(포장)	1개	'00.7.6	"	만수여중 후문	"	"
50	좌판(포장)	1개	'00.7.6	"	만수주공1단지 후문	"	"
51	입간판	1개	'00.7.13	"	만수2동 향림여관	"	"
52	입간판	1개	'00.7.13	"	구월3동 먹자 골목 내	"	"
53	물탱크	1개	'00.7.13	"	구월3동 문화회관 입구	"	"
54	손수레	1개	'00.7.14	"	간석1동 주공아파트 담장	"	"

일련 번호	물건명	수량	보관 연월일	보관 장소	위반장소	취급자 성명	비고
55	조립식 천막	1개	'00.7.18	남동구청	남동공단 해수탕 앞	신동수	도로무단 점용
	손수레	1대					
	가스통	2개					
56	손수레 가스통	1대 1개	'00.7.21	"	구월여중 앞	"	"